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E등급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표1]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치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3. 그 밖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
|--|

한편 2017. 2. 20. 천안시 ○○구 ○○동에 위치한 ○○○○ 용벽 위험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2. 24. 현장확인을 하고 3.16. 같은 법 제75조¹⁾에 따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시설의 경우 육안

○○○○단과 천안시 ○○구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합동점검 결과 콘크리트 벽체의 변형변위가 약 150mm발생하여 하부담장이 전도되었고, 철근 피복노출으로 인한 기능상실, 벽체콘크리트 박리, 장마 시 표면수 지하로 유입가능되어 붕괴위험 등의 사유로 위 옹벽은 E등급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월2회 안전점검, 해당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홈페이지 공고, 옹벽 변위 계측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진1] ○○주택 합동점검 결과



- 옹벽콘크리트 벽체의 변형
- 약 150mm 하부담장으로 전도 우려
- 철근 피복 노출되어 기능 상실
- 벽체 콘크리트 박리박락

1.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소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문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안전등급 확정이 가능함

이에 따라 천안시 ○○구에서는 ○○○○ 16세대 소유자에게 용벽 안전조치(철거 및 재시공)요구를 우편, 전화, 방문설명 등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인 ○○○○에서는 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소유자 전부에게 행정사항을 전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유²⁾로 안전점검 후('17. 2) 감사일('17년 11월) 현재까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수·보강 조치없이 위험시설물을 방치하고 있고,

또한 용벽붕괴 위험으로 ○○○○ 인근 ○○○○ 옥외 주차장 사용자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붕괴위험이 있는 용벽 상부의 경우 출입통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행정상 협조 조치를 취한 용벽 하부 인근 주차장의 경우도 사용자제 협조 공문과 다르게 상시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마 시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붕괴위험성이 가장 높은 여름철(전문가 의견)에도 차량들이 주차되어 용벽이 붕괴될 경우 인명 및 차량과손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진2] 용벽 상·하부 관리 현황



2) 총16세대 중 3세대만 ○○○○ 용벽 철거 및 재시공 분담금(세대당 106백만원)을 ○○○○ 총무에게 납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위험요소 제거 장·단기 계획 미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2] 장·단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
|---|

따라서 E등급으로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붕괴위험성이 가장 높은 장마철, 해빙기 등에 옹벽 상부 및 옹벽하부 인근 주차장 폐쇄조치, 계측기 변형 유무를 확인가능토록 ○○○○ 인근 주민과 비상연락망 구축, 옹벽 붕괴 시 안전관리 조치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옹벽 재시공 및 철거 조치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계획, 계획 지연에 따른 위험시설물 장기간 조치에 따른 대책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옹벽 붕괴 상황에 대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위 관서에서는 재난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옹벽 붕괴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시정] 위험요소 제거 장·단기 계획을 즉시 수립하시고, 용벽 붕괴 상황에 대비한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